

의안번호	2207165
의 퇴 인	임이자의원
회 답 일	2025.4.11.
추 계 번호	24B644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6,900만원, 2030년 2억 6,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3억 4,600만원(연평균 2억 6,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회의의 구성 등(안 제15조)	269	269	269	269	269	1,346	269

주: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조정(調整) 및 분쟁해결 지원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3.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의무규정
3	안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둠.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8.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제1항제8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분쟁 조정,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제10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조(목적)	—	• 미대상 – 노동위원회 설치 목적에 관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4	안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안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과 함께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안번호 2207166호)은 노동약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상담, 협의, 조정 등의 지원 사업과 이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노무제공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하는 업무량 및 필요한 증원 인력의 수 등을 예측할 수 없음
3	안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	• 비용추계 – 유사사례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개정안은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7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부문별 위원회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위원회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정안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설치되는 분쟁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수를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움
 - 본 추계서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규모는 현행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부문별 위원회의 사례를 토대로 추계
 - 현재 노동위원회 내에는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등의 부문별 위원회가 있으며, 개정안에 규정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재위원회(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인)의 사례를 토대로 산출

1)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노동약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약자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지원하는 공익위원을 둔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위원 수) 3인(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인)
- (회의개최 횟수) 2024년 고용노동부 소관 중재위원회의 현황을 참고하여 연 2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서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규정된 모든 지방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2]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경기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상남도	경상남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청북도	충청북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 추계결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억 4,600만원으로 추계됨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표 3]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회,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3	3	3	3	3	—
회의개최 횟수(B)	23	23	23	23	23	—
사례금 단가(C, 만원)	30	30	30	30	30	—
소계(D=A×B×C)	21	21	21	21	21	104
지방노동위원회의 수(E)	13	13	13	13	13	—
추가재정소요(F=D×E)	269	269	269	269	269	1,346

자료: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2024년 12월)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